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2. 개정 이유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국토부, '26.5.12일 발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전입신고 의무 제외

## 3. 주요 개정 내용

- 담보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주택인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채무자의 전입신고 의무 면제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6년 5월 13일(수) 18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금융처)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윤현기(smile@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566

붙임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